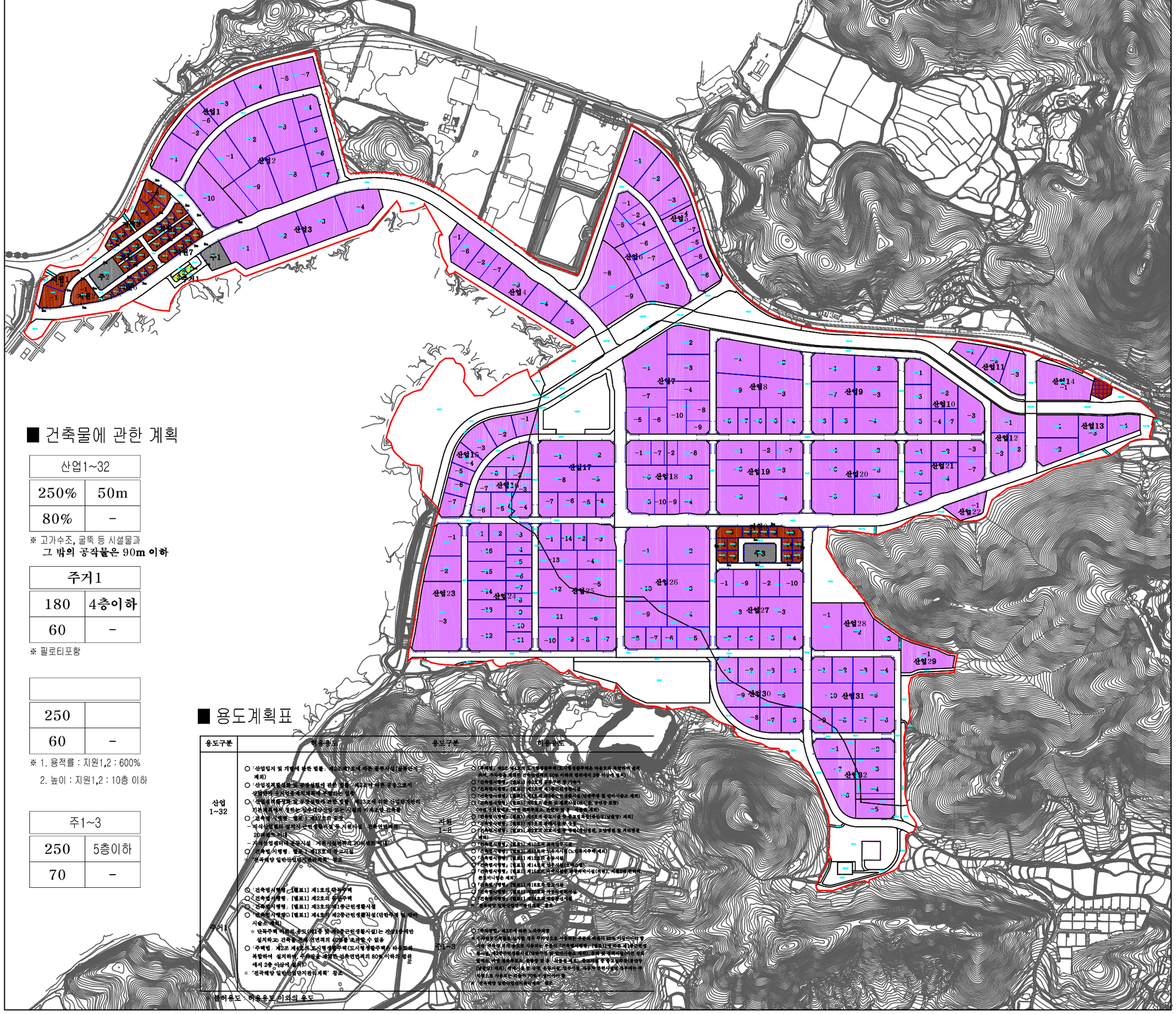

■ 건축물에 관한 계획

산업1~32	
250%	50m
80%	-

※ 고가수조, 굴뚝 등 시설물과
그 밖의 공작물은 90m 이하

주거1	
180	4층이하
60	-

※ 필로티포함

250	
60	-

※ 1. 용적률 : 지원1,2 : 600%
2. 높이 : 지원1,2 : 10층 이하

주1~3	
250	5층이하
70	-

■ 용도계획표

용도구분	허용용도	용도구분	허용용도
산업 1~32	○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(골재단지 제외)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 유치보호제지계획에 고려하는 업종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반시설 내에 (지원는 입주업체 산업 또는 시설의 이해조만 관측을 ○ 「관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- 지식산업센터 제외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(일부인 경우에는 20% 이내 이내) - 지식산업센터의 주동시설 지원시설에 관한 20% 이내 이내)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※ '전국해양 일반산업단지관리계획' 참조	지원 1~8	○ 「주택법」 제2조 제4호의 도시정비법주택(도시정비법주택은 타용도의 계획안에 설치하,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의 80% 이하의 범위에서 2층 이상에 설치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호의 단독주택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야외극장 포함) (위험 기피시설로 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장소 (지원는 제외)로서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6호의 종교시설 (공공기관 공연장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7호의 판매시설 (공공기관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8호의 의료시설 및 복합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0호의 교육시설 및 복합교육시설(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1호의 수련시설 (노인복지주택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2호의 숙박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4호의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5호의 근린생활시설(야외극장, 제조업을 위한 연구시설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6호의 방송통신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7호의 발전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1호의 동물관련시설 ※ '전국해양 일반산업단지관리계획' 참조
주거1	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호의 단독주택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※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(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)는 전용주택에만 설치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 ○ 「주택법」 제2조 제4호의 도시정비법주택(도시정비법주택은 타용도와 복합하여 설치하되,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의 80% 이하의 범위에서 2층 이상에 설치) ※ '전국해양 일반산업단지관리계획' 참조	주1~3	○ 「주택법」 제2조 제4호의 도시정비법주택(도시정비법주택은 타용도와 복합하여 설치하되,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의 80% 이하의 범위에서 2층 이상에 설치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호의 단독주택 (다가구주택, 다중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 (기숙사 및 다세대주택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야외극장 및 야외음악당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6호의 종교시설 (공공기관 공연장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7호의 판매시설 (공공기관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8호의 의료시설 및 복합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0호의 교육시설 및 복합교육시설(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1호의 수련시설 (노인복지주택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2호의 숙박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4호의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5호의 근린생활시설(야외극장, 제조업을 위한 연구시설 제외)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6호의 방송통신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17호의 발전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1호의 동물관련시설 ※ '전국해양 일반산업단지관리계획' 참조

※ 불허용도 :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